

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대상자에게 취업지원 종료통지서 등을 우편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동법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- 건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통지
- 근거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및 동법 제29조 제1항, 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
-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연 번	성명	생년월일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 내용			송달불능 사유	주소
				확정된 처분 제목	처분 사유	처분 내용		
1	이○우	99.10.11.	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통지서	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	○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기간 만료 ○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 지원 종료 통지서 반송	○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 지원서비스 종료 ○ 종료일로부터 3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	폐문부재	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(이하 생략)

4. 공고 기간: 2023. 1. 6.~2023. 1. 20.(15일간)

5. 기타 사항은 양주고용복지+센터 이정화(☎ 031-849-2372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3. 1. 6.

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장

